※ 교통안전시설 원인자 부담공사 처리절차

신호기, 안전표지, 노면표시(문자, 색, 기호), 표지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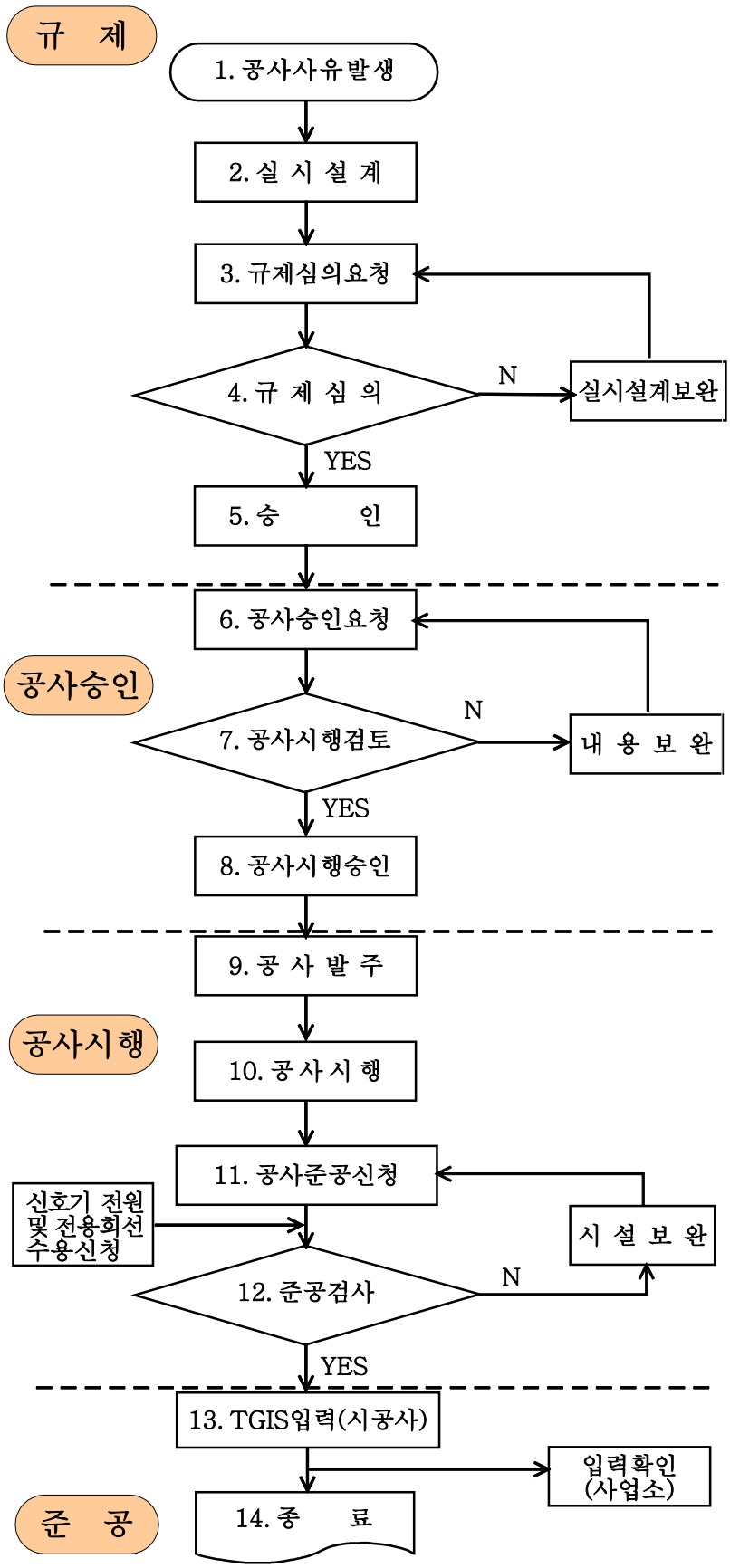

1. 공사사유 발생
○ 원인자공사 : 도로개설, 확장, 재개발 등

2. 실시설계
○ 원인자공사 : 원인자가 설계업체 선정 실시설계 시행

3. 규제심의 신청
○ 원인자공사 : 원인자가 신청

※ 14m이상 도로 : 경찰청
14m미만 도로 : 경찰서

5. 규제승인통보
○ 원인자공사 : 원인자와 사업소 및 자치구에 통보

7. 공사승인 사항
○ 원인자공사 : 사업소, 자치구에서 검토승인(설계,감리,시공업체 적격여부 등 검토)

12. 공사 준공검사
○ 원인자공사 : 본부, 사업소,자치구에서 현장확인 후 준공처리

13. 준공통보
○ 원인자공사 : 본부, 사업소, 자치구에서 시청과 경찰청에 준공확인 통보

14. GIS 입력 : 시공업체 및 감리 입력
○ 입력여부 사업소, 자치구에서 확인